

법 인 진 술 서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 -

상기 본인은 운전자 의 도로법 위반 사건의 법인 지배인으로써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 다 음 -

현행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을 받고 있으나 사실상 화주 화물을 적재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실관계에 있으며 과적은 화주의 책임이고 1998년 1월 1일 이전에는 모든 운수사업법상 직영의 조건으로 운수사업 면허가 허가되었지만 1998년 1월 1일 이후에는 사실상 엄격하게 지입제가 허용되어 현물출자를 하고 있는 관계로, 향후 더욱더 교육을 강화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다음부터는 도로법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지 않고,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교육 강화 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자동차등록증 사본

2004년 08월 일

법 인 명 :

소 재 지 :

대표이사 :

진 술 인 : (인)

귀 중

위 임 장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함.

화물차량의 도로법 위반에 대한 일체의 진술 행위를 위임하여 도로법54조 운행 제한 진술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

주 소 :

대표이사 :

귀 중